



논산을 새롭게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24호
------	-------

<p>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5. 8. 29.

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호	제124호
----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8. 2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관 광 과 장

1. 제안이유

- 백제군사박물관 별관에 어린이 AI 상상놀이터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실정에 맞는 시설 명칭 정비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-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편의시설,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명확화(안 제1조)

- 박물관 및 묘역의 관리·운영 목적에 시민의 체험과 창의적 교육 활동 증진을 명시함.

나. 용어 정비 및 신설(안 제2조)

- 상상놀이터를 어린이 AI 체험 공간으로 정의하고 시설을 박물관, 묘역, 상상놀이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설함.

다. 개관 및 휴관일 정비(안 제3조)

- 상상놀이터 신설에 따라 개관 및 휴관일 기준을 시설 전체에 적용하도록 정비하고, 매주 월요일을 정기 휴관일로 명확히 함.

라. 관람 및 이용시간(안 제4조)

- 박물관·묘역의 관람시간을 정비하고, 상상놀이터의 이용시간을 신설함.
- 마. 시설의 관람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6조)
 - ‘관람금지’를 ‘관람 및 이용 제한’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전 시설로 확대하고 ‘관람자’를 ‘관람자 또는 이용자’로 수정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함.
- 바. 편의시설 설치·운영 (안 제10조)
 - ‘시설’을 ‘편의시설’로 수정하고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함.
- 사. 시설 운영 및 지원(안 11조)
 - 기존 ‘주차료 등’ 조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시설의 전시·교육·체험 기능을 명시하며, 예산 지원 및 전문가 협력 근거를 신설함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기타사항
 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9115(2025. 8. 11.)]
 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26182(2025. 8. 13.)]
 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8911(2025. 8. 13.)]
 - 4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25. 7. 24. ~ 2025. 8. 13. (21일간)
 - 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 - 5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 - 6) 충청남도 소관실과 : 충청남도 문화정책과(041-635-3821)

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백제군사박물관 및 계백장군 묘역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백제군사박물관과, 논산시에 조성된 계백장군 묘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시민의 역사·문화 체험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“계백장군묘역“(이하 “묘역“이라 한다)이란”을 ““묘역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자료“란”을 “자료”란”으로, “백제군사박물관 (이하 “박물관“이라 한다)·묘역”을 “박물관·묘역”으로 한다.

1. “박물관”이란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된 백제군사박물관을 말한다.

3. “상상놀이터”란 박물관 부지 내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어 어린이의 창의적 체험과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AI 상상놀이터를 말한다.

4. “시설”이란 박물관, 묘역 및 상상놀이터를 통칭한다.

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박물관·묘역”을 각각 “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박물관·묘역의 수리·보수 등”을 “시설의 수리·보수 또는 그 밖의 운영상”으로, “휴관일”을 “날”로 한다.

3. 매주 월요일

제4조의 제목 “(관람시간)”을 “(관람 및 이용시간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하고,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관람 개시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”을 “하며, 박물관의 입장 가능 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상상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, 입장 가능 시간은 이용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의 제목 “(관람금지)”를 “(관람 및 이용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람을”을 “시설의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행위제한)”을 “(행위 제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“관람자”를 각각 “관람자 또는 이용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박물관·묘역 관람자”를 “시설 관람자·이용자”로, “시설”을 “편의시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4호(중전의 제3호)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설”을 각각 “편의시설”로 한다.

3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

제11조의 제목 “(주차료 등)”을 “(시설 운영 및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시장은 시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시 프로그램, 교육 콘텐츠, 체험 활동 및 디지털 학습 자료 등을 기획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설 운영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관 광 과 장	최 동 학
안	계 백 사 업 팀 장	표 수 희
자	담 당 자	최 유 경 (746-8432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역사·학문·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·관리·보존·연구·전시함으로써 지역 문화발전 및 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백제군사박물관과 계백장군묘역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신 설></p> <p>1. “계백장군묘역“(이하 “묘역”이라 한다)이란 계백장군 묘소, 계백장군 사당인 충장사 등을 말한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신 설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백제군사박물관과, 논산시에 조성된 계백장군 묘역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시민의 역사·문화 체험과 창의적 교육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“박물관”이란 논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설치된 백제군사박물관을 말한다.</p> <p>2. “묘역”이란 ----- --.</p> <p>3. “상상놀이터”란 박물관 부지 내 별도의 건물로 설치되어 어린이의 창의적 체험과 디지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 AI 상상놀이터를 말한다.</p>

<신 설>

2. “박물관 자료”란 보존·관리·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등에 의하여 백제군사박물관 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·묘역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.

제3조(개관 및 휴관) ① 박물관·묘역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, 그 시설 및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개방한다.

② 박물관·묘역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3. 설 당일 및 추석 당일이 아닌 공휴일 다음날

4.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박물관·묘역의 수리·보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

③ (생략)

4. “시설”이란 박물관, 묘역 및 상상놀이터를 통칭한다.

5. -----
-- 자료”란 --- 박물관·묘역

-----.

제3조(개관 및 휴관) ① 시설-----

-----.

② 시설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매주 월요일

4. -----
--- 시설의 수리·보수 또는
그 밖의 운영상 -----
---- 날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조(관람시간) ① 박물관·묘역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, 박물관의 입장시간은 관람 개시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조(관람금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제6조(행위제한) ①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3. (생략)
4.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
제4조(관람 및 이용시간) ① -----

----- 하며, 박물관의 입장 가능 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-----
-----.

② 상상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며, 입장 가능 시간은 이용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.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시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5조(관람 및 이용 제한) -----

----- 시설의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행위 제한) ① 관람자 또는 이용자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 관람자 또는 이용자---

② (생략)

제10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①
시장은 박물관·묘역 관람자의
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
각 호의 시설을 설치·운영할
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
는 시설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
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
경우에는 법인·단체 또는 그
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
영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11조(주차료 등) 시장은 박물관
·묘역 관람 또는 자료의 이용
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에 대
하여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
한다.

<신설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 ①
----- 시설 관람자·이용자-----

----- 편의시설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전기자동차 충전시설

4. -----
-- 편의시설

② ----- 편의시설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 (시설 운영 및 지원) ① 시
장은 시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
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시 프
로그램, 교육 콘텐츠, 체험 활동
및 디지털 학습 자료 등을 기
획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 사업을
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
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
수 있다.

<신 설>

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관련 전문기관·단체 또는 전문가와 협력하여 시설 운영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

제12조(설립과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·관리·보존·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